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6. 24. 이해민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6. 25.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이해민의원)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9.24. 제8차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 59조의3제1항·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임.

다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유죄의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등 그 특수성이 있어, 미확정 민사판결서와 달리 미확정 형사판결서 공개 시 형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